

2020. 2.

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입법평가 기본계획



충 청 남 도 의 회
(입 법 정 책 담 당 관)

... 목 차 ...

I. 추진방향	1
II. 추진개요	1
III. 세부 추진계획	2
①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	2
② 조례 사후입법평가 시범평가	2
① 자체 평가	3
② 연구용역 평가	5
③ 입법평가위원회 심의	6
④ 평가결과 활용	7
IV. 향후 계획	7

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기본계획

❖ 충청남도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입법평가 기본계획임.

I 추진 방향

- 조례 사후입법평가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 병행 추진으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 정착
- 평가방법 장·단점 및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효율적·상시적 조례정비 시스템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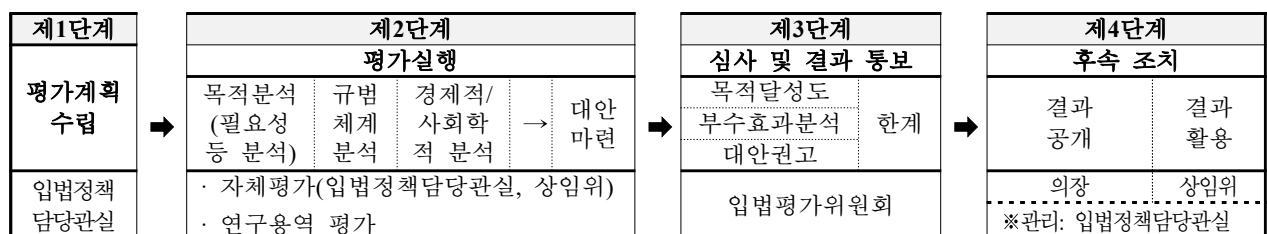
II 추진 개요

- (추진근거)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
- (시범평가 대상) 25개 조례 (※ 각 상임위별 소관 조례 중 5개 조례)
- (시범평가 기간) 2020년 2월~12월
- (평가기준) ※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 제4조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입법 목적의 실현성·실효성 | ②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|
| ③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| ④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|
| ⑤ 위원화·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| ⑥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|

- (평가방법) 자체평가 · 연구용역 평가 병행
 - 평가대상 조례 선정 → 자체·연구용역 평가 → 입법평가 심의자료 작성 → 위원회 심의·의결 → 결과 공유 및 후속조치 이행

○ (평가절차)



- (소요예산) 40,000천원(위원회 운영 20,000천원, 연구용역비 20,000천원)
 - 위원회 운영비(1회 추경 확보), 연구용역비(입법정책 연구용역비 활용 또는 1회 추경확보)

Ⅲ 세부 추진계획

1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(※ 위원회 구성·운영계획 별도 수립, 2월 中)

- 목 적 : 실효성 있는 「조례 사후 입법평가」 심의·결정을 위하여
내·외부전문가로 균형 있는 입법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
- 구성(안) : 총 15명(도의원 5명*, 외부전문가 10명)
 - 위원장·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 - 위 원 : 도의원,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,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,
기타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
 - * 의장 (1), 부의장 (2), 교섭단체 대표 (2) 추천
 - 임 기 : 3년(1차 연임 가능)
- 기 능 : 조례 사후 입법평가 자료 심의 및 개선안 마련 등

2 조례 사후입법평가 시범평가

- 목 적 : 시범평가 결과분석을 통한 전체 조례 대상 사후입법평가 방향 마련
- 대 상 : 25개 조례 (※ 각 상임위별 소관 조례 中 5개)
 - 선정범위 : 법령위임조례를 포함한 평가대상 조례(111건) (※ 붙임 3 참고)
 - 선정방법 : 각 상임위 소관 조례 중 주요 조례 중심으로 협의·선정
 - 선정기간 : 2020년 2월말

<조례 사후입법평가 대상(조례 제3조제2항) >

- 대 상 : 제정 또는 전부개정시행 후 3년경과 조례 / 입법평가 실시 후 4년경과 조례
- 제 외 : 단순기술적 조례, 법령위임조례
- ➔ 법령위임조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행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, 시범평가 시 법령위임조례 포함하여 시범평가 추진

< 평가대상 조례 현황 >

	총 계			자치조례			위임조례		
	소 계	제 정	전부개정	소 계	제 정	전부개정	소 계	제 정	전부개정
합 계	111	92	19	69	64	5	42	28	14
본 청	88	70	18	56	51	5	32	19	13
교육청	23	22	1	13	13	-	10	9	1

- 기 간 : 2020년 2월 ~ 9월
- 방 법 : 자체평가 및 연구용역 평가 병행

❶ 자체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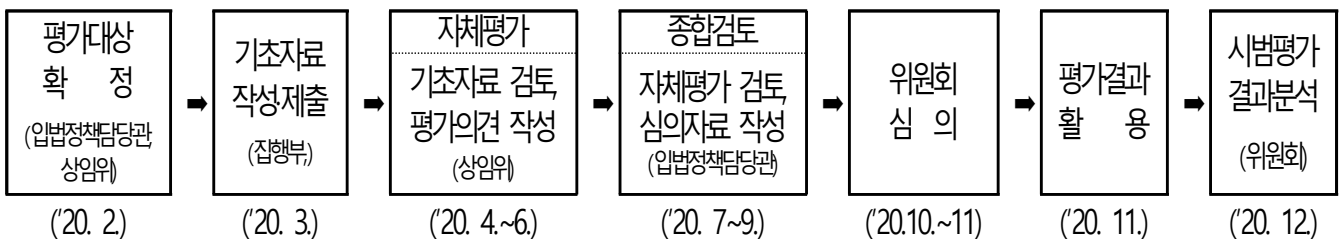
❶ 개 요

- 대 상 : 25개 조례
- 기 간 : 2020년 3월~9월
- 방 법 :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른 평가

※ 입법평가 분석지표 : 8개 평가항목 33개 세부항목

평가항목	세부항목
1.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	① 위임조례 구분 ② 위임근거의 적정성 ③ 위임범위 내 제·개정 ④ 조례 제·개정 이후 유사 법령 등 제정 여부 ⑤ 권리 유보조항 등에 대한 법률 위임 여부
2. 조례의 실효성	⑥ 다른 조례와의 충돌 또는 모순 여부 ⑦ 유사·동일 다른 조례와의 통합 필요성 ⑧ 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⑨ 책무 부여 여부 ⑩ 책무 및 사업 이행
3. 조례의 공평성	⑪ 장애인, 성별차별 등 여부 ⑫ 차별의 합리성
4. 주민 수용성	⑬ 입법예고 여부 ⑭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여부 ⑮ 조례 관련 민원 여부 ⑯ 쉬운 조례 체계 및 용어
5. 조례 내용의 적정성	⑰ 재정지원 규정 여부 ⑱ 지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⑲ 예산 확보 및 집행의 이행 여부 ⑳ 지원대상의 구체성 ㉑ 민간위탁 대상의 적정성 ㉒ 재량권 범위의 적정성
6. 충남 현실 부합성	㉓충남 현실과 조례의 부합 여부
7.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	㉔ 위원회 설치 근거 ㉕ 위원회의 법적 성질 ㉖ 위원회 위원 성별구성의 적정성 ㉗ 위원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 보존 여부 ㉘ 위원회 유지 필요성 ㉙ 위원회 통합 필요성
8. 종합의견	㉚ 조례 현행 유지 필요성 ㉛ 조례 개정 필요성 ㉜ 조례 폐지 필요성 ㉝ 기타 의견

【자체평가 추진절차】



ii 조례 사후입법평가 시범평가 실무자 사전설명회(입법정책담당관)

- 도 본청 및 교육청 시범평가 담당실무자 및 도의회 상임위원회 평가 담당자 대상 조례 사후입법평가 목적, 방법, 절차 등 사전설명회 실시

iii 기초자료 작성·제출(도 본청 및 교육청 → 각 상임위)

- 각 평가대상 조례의 도 본청 및 교육청 소관부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
- 제출서류 : 각 평가대상 조례별 사후입법평가 기초자료 【붙임 2-1】
 - ※ 평가항목별 기초자료【붙임 2-1-1】 ~ 【붙임 2-1-9】는 지정서식을 작성하여 제출
 - ※ 평가항목별 기초자료를 증빙하기 위한 기타 첨부자료는 임의서식 작성·제출 가능
- 제출기간 : 2020년 3월말

iv 자체평가(각 상임위)

- 평가대상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는 본청 또는 교육청 소관부서가 제출한 기초자료 등을 검토하고 각 조례별 평가의견 작성 후 입법 정책담당관실 제출
- 대 상 : 각 상임위원회별 선정된 5개 조례
- 기 간 : 2020년 4월~6월말
- 방 법 :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에 따른 평가
- 제출서류 : 각 평가대상 조례별 평가 자료 【붙임 2-2】
 - ※ 각 평가대상 조례별 집행부 제출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도 반드시 제출
 - ※ 이외의 기타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같이 제출(임의서식 제출 가능)

v 종합검토(입법정책담당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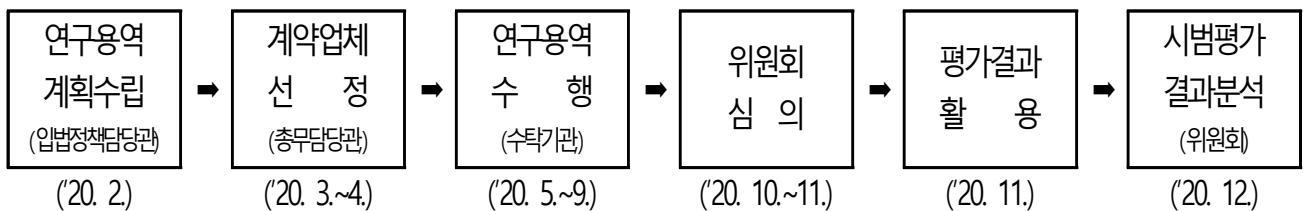
- 각 상임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, 필요시 개별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
- 대 상 : 25개 조례
- 기 간 : 2020년 7월~9월말
- 방 법 : 사후 입법평가 기준(조례 제4조)에 따른 종합검토

② 연구용역 평가

ⅰ 개 요

- 근거 :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 제8조
- 대상 : 25개 조례
- 기간 : '20. 5월 ~ 9월(5개월)
- 내용 :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의한 용역대상 조례 개별평가
- 예산 : 20,000천원(※ 입법정책 연구용역 또는 '20년 제1회 추경 확보)
- 계약방법 : 수의계약(20,000천원 이하)

【연구용역평가 추진절차】



ⅱ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(입법정책담당관)

- 연구용역 목적 및 필요성
- 계약업체 선정 및 연구용역 수행관리
- 연구용역 평가 및 활용계획 등
- 계획수립 : '20. 2월

ⅲ 계약업체 선정

- 연구용역 수행기관 : 입법평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
-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선정

※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체결 가능

- 계약방법 : 총무담당관에 계약체결 의뢰(입법정책담당관→총무담당관)
- 선정기간 : '20. 3월~4월말

iv 연구용역 수행

- 용역대상 조례(25개)에 대한 사후입법평가 및 개선의견 제시
- 평가 방법 : 조례 사후입법평가 기초자료 및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른 평가
 - 자료 제공 : 집행부 작성·제출한 조례 사후입법평가 기초자료 등 제공
 - ※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추가(보완) 자료 요청 시 집행부 소관 부서 적극 협조 및 필요시 집행부 소관 부서 방문조사
- 수행기간 : '20. 5월~9월말
-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
 - 착수보고회 :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 세부계획 보고
 - 최종보고회 : 계약만료 14일 전 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
 - 연구용역보고서 최종 검토 및 확인

v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

- 연구용역 평가결과에 따른 개별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평가의견* 및 개선방안 제시
 - * ① 걱정, ② 제개정, ③ 폐지, ④ 기타(통폐합 등)
- 제출기한 : '20. 9월말

3 입법평가위원회 심의

- 심의대상 : 자체평가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
 - ※ 총괄부서(입법정책담당관)가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 종합 검토 후 심의자료 작성
- 심의기간 : 2020년 10월~11월
- 심의기준 : 사후 입법평가 기준(조례 제4조)
- 심의절차 : 심의자료 위원별 발송 → 위원별 검토* → 회의 개최
 - *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평가의견을 작성【붙임 2-4-2】하여 입법정책담당관실로 E-mail 등 송부
- 심의회의 개최 결과 : 최종평가의견 확정
 - 자체 및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심의·조정하여 최종평가의견* 확정
 - * ① 걱정, ② 제개정, ③ 폐지, ④ 기타(통폐합 등)

4 평가결과 활용

- 입법평가 결과 통보 및 활용(입법정책담당관→ 상임위·도 본청 및 교육청) : '20. 11월말
 - (입법정책담당관) 입법평가 심의결과 통보서 【붙임 2-4】 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, 도 본청 및 교육청 통보
 - (상임위원회)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(조례 개정 등)에 적극 반영
 - (도 본청 및 교육청) 최종평가결과(제·개정, 폐지, 기타)에 따라 향후 조치계획 【붙임 2-5】 을 작성하여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
- 입법평가 결과 공표(입법정책담당관) : '20. 11월말
 - 도의회 홈페이지 (의회소식 → 기타 자료실)
- 조례 사후입법평가 시범평가결과 종합분석·평가(입법평가위원회) : '20. 12월
 - 대 상 : 2020년도 조례 사후입법평가 시범평가
 - 내 용 : 「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」 개정 필요성* 및 향후 운영방안 등

* 법령위임조례 포함여부 및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정비 등

IV 향후 계획

-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: '20. 2월
- 조례 사후입법평가 시범평가 대상조례 선정 : '20. 3월
- 조례 사후입법평가 관련 예산 확보 : '20. 5월 예정(제1회 추경)*
 - * 입법정책 연구용역 미선정 시
- 조례 사후입법평가 시범평가결과 종합분석·평가 : '20. 12월